

2018 안전문화 유공자(개인)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

□ 개 요

- (추진배경)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·포상
- (추천대상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·근원적 관리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**일반국민 및 공무원**
- (주요분야) 안전문화 활성화, 안전문화 홍보 등을 통한 의식개선, 안전분야 봉사활동, 안전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
- (선발방법)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단체 등 안전문화 유공기관을 통한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
- (포상내역)

구 분	계	정 부 포 상			장관 표창
		포장	대표	국표	
계	36	3	4	4	25
일반국민	29	3	3	2	21
공무원	7	-	1	2	4

* 심사결과 수상자 없을 수 있으며, 최종 공적심사 결과 포상 훈격 변동 가능

□ 후보자 추천

- (제출기한) 2018. 7. 31.(화) 18:00까지
- (추천기관) 중앙부처, 광역·기초 지자체, 공공기관 및 안문협 등 안전문화 유관 기관(소속기관 및 지부 포함)
- (추천방법) 추천기관은 적격자 검증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공적을 심사하고, 훈격 구분 없이 기관별 최소 2명 이상 추천(가나다 순)
 - 공문 및 이메일(민간기관 추천에 한함) 제출(safeedu@korea.kr)
 - * 수공기간, 재포상 금지기간, 추천제한에 저촉되는 자 등은 추천 불가

- (유의사항)
 - 공적내용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,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 빠짐없이 작성·제출
 -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 시 반드시 포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민원발생 소지 사전 차단

□ 포상 기준

- (기본원칙) 추천기관은 「상훈법」 제4조에서 정한 ‘중복수여의 금지’,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‘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’ 및 「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」, 「2018년 장관 표창 업무지침」(행정안전부)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엄수
- (수공기간)

구 분	정 부 포 상			장관 표창
	훈장	포장	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	
수공기간	15년 이상	10년 이상	5년 이상	3년 이상

- (재포상 금지기간)
 -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.
 -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,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.

□ 추천 제한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 -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-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-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※ 기타 세부사항은 「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 및 「2018년 장관표창 업무지침」(행정안전부 참조)

□ 추진 일정

- 공개 검증 및 서류심사 : '18. 8월
- 공적심사위 개최 : '18. 9월 중
-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: '19년

붙임		심사 지표	
구분	지표명	지표정의	가중치
공통지표 (40)	국가발전 기여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	10
	국민생활 향상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(삶의 질)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	10
	고객 만족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	10
	창조적 기여도	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	10
특성지표 (60)	공적기간	안전문화 분야 종사 및 안전 관련 업무 경력 연수	10
	업적도	안전문화 관련 분야 대회 입상, 기술개발, 제도개선, 봉사실적 등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	20
	기여도	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 제도, 관행 변화 등을 위하여 안전문화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정도	10
	난이도	안전문화 업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노력 및 전략, 전문성, 열악한 환경 정도	5
	평판도	안전문화 분야에서 추천 대상자의 평판 및 지지 정도	5
	인지도	안전문화 실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	5
	창조도	안전문화 분야에서의 의식 개선 등 패러다임 변환 정도	5